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114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09.27. ~ 2023.10.10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전리라	1965.00.20.	0178230274100000681	₩5,269,800	대전시 대덕구 송촌남로
2	황홍익	1960.00.06.	0178220274100004076	₩1,697,080	경기도 양주시 고암길
3	도수정	1985.00.21.	0178200274100004084	₩31,860,000	대구시 남구 현충동길
4	유한회사 아르마린	160114-0008662	0178200274100003777	₩13,275,000	대전시 동구 대전로 470번길 64, 107호
5	공정식	1971.00.07.	0178230274100000675	₩3,414,960	충남 아산시 시민로
6	김상근	1974.00.02.	0178200274100004953	₩8,850,000	대전시 대덕구 중리동로 17번길
7	송광섭	1972.00.02.	0178200274100004921	₩29,736,000	충남 보령시 대흥로
8	신홍재	1964.00.13.	0178200274100004958	₩13,381,2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 3길
9	박병주	1967.00.10.	0178230274100001172	₩1,897,200	전북 익산시 고봉로 34길
10	임대선	1965.00.16.	0178200274100004910	₩19,116,000	대전시 유성구 도안대로
11	김영희	1967.00.28.	0178200274100004955 0178200274100004977	₩22,302,000 ₩21,240,000	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
12	김낙현	1960.00.16.	0178200274100004954	₩22,302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 1길
13	이범준	1980.00.05.	0178200274100004887	₩8,750,000	충북 청주시 흥덕구 만수 1길
14	전정두	1984.00.25.	0178200274100004905	₩8,602,200	대전시 서구 도솔로 327번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진종갑	1962.00.03.	0178200274100004981 0178200274100004913 0178200274100004906	₩9,558,000 ₩1,770,000 ₩38,232,000	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67 번길
16	강연희	1966.00.03.	0178200274100004930	₩19,116,000	대전시 서구 관저북로
17	박수동	1957.00.07.	0178200274100005902	₩5,686,980	대전시 중구 태평로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